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(일반법인용)

※ 뒤쪽	의 작성병	방법을 참고	마되비 [기사하]	¹ , 색상이 어	두운 란은 신청인	이 적지 않습	니다.					(앞쪽)
			①법인명					②법인등록번호 ④전자우편주소				
납세자												
		⑤주소										
안분	내역											
⑥자치단체 기사업			9사업장	⑩사업장 소재지	⑪종업원	⑫건축물		연면적(m²)		⑬안분 율	- · · · · - · · - · · - · · - · · - ·	
시 · 도	시 · 군 · 구	장 구분	등록번호	명	(시 • 군 • 구 별 작성)	수(명)	계	건물	기계 장치	시설 물	_ (소수점6 자리)	특별징수납부세액 (기납부세액)
힘	계											

^{※ 「}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·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·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·군·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□ 납세자란

①법인명: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
②법인등록번호: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③전화번호: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
④전자우편주소: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.

⑤주소: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.

□ 안분내역란

⑥자치단체: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.⑦사업장 구분: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.

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	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	연결자법인의 본점	연결자법인의 지점	특별시·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
01	02	03	04	05

- ⑧사업자등록번호: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⑨사업장명: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.
- ⑩사업장소재지: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.
- ⑪종업원 수: 「지방세법」 제74조제8호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.
- ⑩건축물 연면적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)의 연면적을 적습니다. 다만,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(수조・저유조・저장창고・저장조・송유관・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)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.
- ®안분율: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(7번째 자리 절사)하고,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합니다.

안분율 =
$$\left(\begin{array}{c} \frac{\text{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 수}} + \frac{\text{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}} \right) \div 2$$

- ⑩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 :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별지 제43호서식)의 ⑩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.
 - 단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·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·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,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은 비워둡니다.
- ※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(군・구) 과(☎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(연결집단용)

※ 뒤쪽	의 작성병	,법을 참고	매되비 [디시6]	i, 색상이 어	두운 란은 신청인	이 적지 않습	레다.					(앞쪽)
			①법인명					②법인등록번호				
연결모법인		③전화번호				(4)전	자우	편주소				
			⑤주소									
			(3)十五 (3)十五									
			⑪법인명						®법인등록번호			
연결자법인		W = C 0										
		3인										
안분	내역											
⑥자:	치단체				10)		⑫건축물 연		연면적(m²)		(1)	
		① 사업장	® 사업자	9	사업장 소재지	⑪ 종업원					(3) 안분율	(%)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
시 •	시 · 구 ·	구분	사업사 등록번호	사업장명	(시・군・구	공입원 수(명)	계	건물 기계	시설	(소수점 6자리)		
도	군 • 구				별 작성)		"		장치	물	0 1 1,	
ē	 }계											

^{※ 「}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·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·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·군·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□ 연결모법인란 및 연결자법인란

①, ⑰법인명: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
②. ⑧법인등록번호: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③전화번호: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
④전자우편주소: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.

⑤, ⑩주소: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.

□ 안분내역란

⑥자치단체: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.⑦사업장 구분: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.

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	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	연결자법인의 본점	연결자법인의 지점	특별시·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
01	02	03	04	05

⑧사업자등록번호: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⑨사업장명: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.

⑩사업장소재지: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.

- ⑪종업원 수: 「지방세법」 제74조제8호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.
- ② 건축물 연면적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)의 연면적을 적습니다. 다만,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(수조・저유조・저장창고・저장조・송유관・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)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.
- ® 안분율: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(7번째 자리 절사)하고,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 재합니다.

O.H.C	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	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	1
안문율 =	법인의 총 종업원 수	+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	-) ÷2

- ① 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: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」 (별지 제44호서식)에서 '⑤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' 항목의 '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'에 기재한 특별징수납 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 - 단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·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·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,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은 비워둡니다.
- ※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(군·구) 과(☎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